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836

발의연월일: 2024. 9. 10.

발 의 자:이수진 · 민병덕 · 이연희

서미화 · 김준혁 · 이원택

송옥주 · 김정호 · 추미애

최기상 · 김태년 · 한정애

한창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(轉院)하는 경우 환자가 기존에 진료받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이 전달되고 있음.

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의 소모, 진료기록 사본의 분실 등이 발생하고 있고, 이미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주고받을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 시스템을 통하여 진료기록이 전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따라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3 신설).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21조의3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원(轉院)하는 의료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제21조의2제3항 중 "이하 이 조에서"를 "이하"로 한다.

제2장제1절에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3(진료기록의 전송 요청) ①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② 환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청을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.
- ③ 그 밖에 전송 요청의 방법·절차, 전송의 절차 및 기한, 대리인의 요건 등 진료기록의 전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47조의2 중 "전원(轉院)"을 "전원"으로 한다.

제63조제1항 중 "제23조제2항"을 "제21조의3제1항 후단, 제23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90조 중 "제21조의2제1항·제2항"을 "제21조의2제1항·제2항, 제21조의3제1항 후단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기록 열람 등) ①・② (생	제21조(기록 열람 등) ①・② (현
략)	행과 같음)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,	③
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	
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	
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	
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	
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사ㆍ	
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	
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	
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	
아니하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의2.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이
	제21조의3에 따라 환자의 진
	료기록을 전원(轉院)하는 의
	료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
	요청한 경우
3. ~ 19. (생 략)	3. ~ 19. (현행과 같음)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21조의2(진료기록의 송부 등)	제21조의2(진료기록의 송부 등)
①·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(이하 이 조에서 "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・운영할 수 있다.

④ ~ ⑨ (생 략) <신_설>

③
০] চৌ
<u>.</u>

④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21조의3(진료기록의 전송 요청)
①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인, 의료기관이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중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환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청을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.

제47조의2(입원환자의 전원) 의료 기관의 장은 천재지변, 감염병 의심 상황, 집단 사망사고의 발 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 (轉院)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 의 생명 • 건강에 중대한 위험 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・군수・구청장 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 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. 제63조(시정 명령 등) ①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시장・군수・구 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 항, 제16조제2항,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· 제3항, 제23조제2항, 제34조제2항, 제3

③ 그 밖에 전송 요청의 방법
•절차, 전송의 절차 및 기한,
대리인의 요건 등 진료기록의
전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
지부령으로 정한다.
제47조의2(입원환자의 전원)
<u>전원</u>
제63조(시정 명령 등) ①
레21
조의3제1항 후단, 제23조제2항-

5조제2항, 제36조, 제36조의2, 제37조제1항 · 제2항, 제38조제1 항 · 제2항, 제38조의2, 제41조, 제41조의2제1항 · 제4항, 제42 조, 제43조, 제45조, 제46조, 제 47조제1항,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,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, 종합병원·상급종합병원· 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 항 • 제3조의4제1항 • 제3조의5 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, 의료기관의 장 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 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 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 간을 정하여 그 시설 · 장비 등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 다.

②·③ (생 략)

제90조(벌칙) 제16조제1항 · 제2 저항, 제17조제3항 · 제4항, 제17 조의2제1항 · 제2항(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), 제18 조제4항, 제21조제1항 후단(제4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세90조(벌칙)

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), 제21조의2제1 항·제2항, 제22조제1항·제2항 (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23조제4 항, 제26조, 제27조제2항, 제33 조제1항 · 제3항(제82조제3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• 제5항(허가의 경우만을 말한 다), 제35조제1항 본문, 제38조 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 항, 제41조, 제42조제1항, 제48 조제3항ㆍ제4항,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 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 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 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다.

<u>제21조의2제1항ㆍ제</u>
<u>2항, 제21조의3제1항 후단</u>